

거창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21-114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위임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액화석유가스를 적정히 공급·사용하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안 제2조·별표)

- 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사업소 부지, 충전장소와 보호시설까지의 안전거리 등
- 2) 액화석유가스 판매 및 충전 사업자의 영업소: 사업소 부지, 용기 보관실 구조·면적 등
- 3) 경상남도 적극행정실현 소극행정 특정감사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및 별표 6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1. 9. 16.~10. 6.
 -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허가의 기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의 세부기준(변경허가를 포함한다)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세부기준(제2조 관련)

구분	세부기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2.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는 그 바깥 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 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까지의 안전 거리는 다음 표에 따른 거리 이상일 것 <table border="1" data-bbox="419 792 1420 1070"> <thead> <tr> <th>저장능력</th> <th>보호시설까지의 거리</th> </tr> </thead> <tbody> <tr> <td>10톤 이하</td> <td>24미터</td> </tr> <tr> <td>10톤 초과 20톤 이하</td> <td>27미터</td> </tr> <tr> <td>20톤 초과 30톤 이하</td> <td>30미터</td> </tr> <tr> <td>30톤 초과 40톤 이하</td> <td>33미터</td> </tr> <tr> <td>40톤 초과 200톤 이하</td> <td>36미터</td> </tr> <tr> <td>200톤 초과</td> <td>39미터</td> </tr> </tbody> </table> <p>다만, 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할 경우 저장능력별 안전거리에 0.7을 곱한 거리로 한다.</p>	저장능력	보호시설까지의 거리	10톤 이하	24미터	10톤 초과 20톤 이하	27미터	20톤 초과 30톤 이하	30미터	30톤 초과 40톤 이하	33미터	40톤 초과 200톤 이하	36미터	200톤 초과	39미터
저장능력	보호시설까지의 거리														
10톤 이하	24미터														
10톤 초과 20톤 이하	27미터														
20톤 초과 30톤 이하	30미터														
30톤 초과 40톤 이하	33미터														
40톤 초과 200톤 이하	36미터														
200톤 초과	39미터														
액화석유가스 판매와 충전 사업자의 영업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4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2. 용기보관실은 누출된 가스가 사무실로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19제곱미터 이상일 것 3.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같은 부지에 구분하여 설치하되, 사무실의 면적은 9제곱미터 이상일 것 4. 판매업소에는 용기운반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11.5제곱미터 이상의 부지를 확보할 것 														